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4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가.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를 확산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자연이 숨 쉬는 맑은 마포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 타목)

- 수목 식재 구비 지원 비율 : 60%
  - 자치구 분담률 : 공동주택 분담률 = 60:40

나.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서식 정비(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9. 13. ~ 10.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4) 부서 자체 추가 검토 결과 : 수정사항 있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8.10.11.)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수목 식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 그 밖의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4.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5.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6.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60	40	
8.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40	
10.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0	40	
1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60	4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단, 임의관리단지는 미적용) ▪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2. 수목 식재	60	40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관 리 투명성 (40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5)	생중계(5), 녹화(3), 미공개(0)	
	잡수입의 수입 지출내역 건별 상세 공개(3)	공개(3), 미공개(0)	
	잡수입의 일련번호 부여된 영수증 사용 및 보관(2)	사용(2), 미사용(0)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주민참여검수제 시행(4)	시행(4), 미시행(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여부(4)	수립(4), 미수립(0)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4)	500 원이상(4), 300~500원(3) 100~300원(2) 100원 미만(1)	
	2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구 전문가 자문단 자문 실시 여부(2)	실시(2), 미실시(0)	
	자체 홈페이지 활용 정보공개 여부(2)	공개(2), 미공개(0)	
	입주민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보고(4)	보고(4), 미보고(0)	
	내부 회계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4)	실시(4), 미실시(0)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여부(3)	점검조치(3), 미점검(0)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여부(3)	가입(3), 미가입(0)	
공동체 활성화 (40점)	단지 내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전담 운영자 지원(5)	구성(5), 미구성(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4)	구성(4), 미구성(0)	
	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5)	3강좌이상(5), 1~2강좌(3), 미운영(0)	
	자체 프로그램의 인근 주민 참여 여부(4)	참여(4), 미참여(0)	
	단지 내 시설물의 인근 주민 개방 여부(3)	2개시설이상(3), 1개시설(2), 미개방(0)	
	통행로 개방 등 아파트 간 갈등 해소 사업 추진(3)	2개사업이상(3), 1개사업(2),미추진(0)	
	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처리(3)	안건상정(3), 안건 미상정(0)	
	상가대표단,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발언(2)	참석(2), 미참석(0)	
	층간소음, 애완견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4)	운영(4), 미운영(0)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특수사업(7)	2개사업이상(7), 1개사업(4), 미실시(0)	
시 책 이 행 (20점)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이행의 적정성(5)	적정(5), 미흡(3), 미반영(0)	
	시 및 구청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적정성(3)	적정(3), 미흡(1), 미준수(0)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관련자료 제출, 교육참석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2)	이행(2), 미이행(0)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75점이상	70점이상	65점이상	65점미만	비고
증 감 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마포구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 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70%(마포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8천4백7십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마포구분담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마포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금 상한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2. ---------- ---------- -----. ---------- ---------- ----------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수목 식재
타. (생 략)	파. (현행 타목과 같음)
② ~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 10. (생 략)			(생 략)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 11. (생 략)			(생 략)
1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60	40	
〈신 설〉			
13. (생 략)			

2. ~ 5. (생 략)

1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60	4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12. 수목 식재	60	40	
13.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 제4조제1항제2호 타목

: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수목 식재 구비 지원 비율 : 60%
  · 자치구 분담률 : 공동주택 분담률 = 60:4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도시환경국 주택과 박영아
연 락 처	02-3153-9305